

중세 말 수도 파리에 대한 국가적 경제조치 시도*

—장 2세 정부의 경우—

홍 용 진**

- I. 들어가며
- II. 장 2세의 1351년 2월 칙령
- III. 1350년대 전반기의 정치상황과 1354년 11월 칙령
- IV. 빈곤과 부, 왕국의 경제
- V. 맺음말을 대신하여 : 담론의 유적들 속에서

•

본 논문은 경제 및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임금과 상품가격을 규제하고자 1351년 2월 수도 파리를 대상으로 반포된 장 2세 칙령의 특성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 칙령과 관련하여 1347-1350년의 대 흑사병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구걸에 대한 배척과 노동 강제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본 칙령의 목적은 단지 이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시장과 가격에 대한 왕정의 규제는 빈곤과 노동정책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맥락을 구축한다. 이와 동시에 이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27)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두 문제는 종교 및 윤리적 범주에서 정치 및 경제적 범주로 이행한다. 이 칙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 수준에서, 즉 한편으로는 정치 및 경제적 맥락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왕국의 경제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인구감소라는 재난뿐만 아니라 14세기 내내 가중된 전쟁과 재정 문제에서부터도 기인한다. 국왕 정부는 잉글랜드에 대한 전쟁에 대항하여 재정을 마련하길 원했고 이는 화폐 및 조세와 관련한 경제 문제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와 함께 이데올로기적 맥락에 대한 고찰은 13세기 말과 14세기 초에 등장한 다양한 이론과 담론들로 눈을 돌리게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에지디우스 로마누스는 왕국의 부와 국왕에 의한 통제와 관련하여 교역 및 상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페트루스 요하네스 올리비는 유용성과 가격의 측정기준이 되는 자발적 청빈을 바탕으로 시장, 상인, 화폐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모든 현상들은 14세기부터 노동과 빈곤이 국왕정부의 통제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정치 및 경제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때부터 빈곤은 노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 두 문제들은 왕국의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되었다.

•

중세수도 파리, 빈곤, 노동, 경제정책, 장 2세, 페트루스 요아니스 올리비, 자본

I.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서유럽 중세사회는 빈민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정리된다.¹⁾ 즉 한편으로는 기독교적인 윤리의 차원에서 빈민을 동정과 구휼, 즉 자선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빈민을 경멸과 거부 대상으로서, 즉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주변인으로 보았다. 자선의 대상과 경멸의 대상이 당대 현실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들에 대한 두 가지 태도들이 각각 보여주고 있는 빈민의 의미는 서로 달랐다. 자선의 대상으로서 빈민이 주로 노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약자, 신체불구자, 병약자의 이미지를 내포한다면 경멸의 대상으로서의 빈민은 주로 노동을 기피하며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다니는 부랑자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세속빈민들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와 이중적인 태도 외에 한 가지 태도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빈곤을 예수 행적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이를 이상적인 모범으로 삼는 수도사들의 태도이다. 여기에서 빈곤은 결핍이나 탈선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미 11세기 말부터 라틴기독교세계에서 신앙심이 심화되어 나가면서 금욕과 노동을 중시하는 시토수도회가 등장하였고 피에르 발데스(Pierre Valdès)와 그의 추종자들(Vaudois)의 사례와 같이 예수의 가난함을 모범삼아 살아가려는 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빈곤(청빈)을 경건하고 신실한 삶의 목적이자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누구보다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와 더불어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설립한 수도회는 13세기 내내 빈곤을 가장 중요한 성직자의 기

1) 중세 빈곤 및 빈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로는 Michel Mollat, *Les Pauvres au Moyen Âge*, Paris : Complexe, 2006; 브로니슬라프 게레멕 저, 이성재 역, 『빈곤의 역사 : 교수대인가 연민인가』, 길, 2010, 제1장과 제2장 참조; Jean-Pierre Legauy, *Pauvres et marginaux au Moyen Âge*, Paris : Gisserot, 2009.

준으로 내세우며 경제적으로 발전해가는 중세 사회와 커다란 대비를 이루었다.

이상과 같이 중세 전반(全般)에 걸쳐 널리 퍼져있던 세 가지 서로 다른 빈곤의 의미들은 각각 중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먼저 언급되었던 ‘자선의 대상인 빈민’과 ‘경멸의 대상인 빈민’들은 세속인들의 빈민범주로 묶여진다면 다른 한편으로 빈민에 대한 자선과 수도사들의 청빈은 종교적 윤리에 따른 행위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수도사들의 탁발행위는 종종 다른 세속 부랑자들과 마찬가지로 경멸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즉 세속인들의 물질적 결핍, 종교적 이상의 실천, 사회적 주변성의 문제들은 각각 중세의 빈곤을 가로지르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중심축들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세가 지나 16세기, 특히 종교개혁기에 들어오면 유럽 전역에서 빈곤과 빈민에 대한 담론들은 사회질서와 노동이라는 관점 아래서 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두, 즉 테시테리우스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은 노동과 사회질서를 예찬하고 나태와 탐욕을 경멸하며 빈곤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²⁾ 또한 같은 시기 튜더왕조 시기 잉글랜드에서도 ‘고용을 통한 빈민구제’를 중심으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³⁾ 특히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사회질서를 위한 억압적 조치들과 노동의 부과가 빈민들에게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 또한 게레멕이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16세기부터였다.⁴⁾

2) 브로니슬라프 게레멕, 앞의 책, 222~236쪽.

3)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2002, 201~224쪽.

4) 브로니슬라프 게레멕, 『빈곤의 역사』, 제3장과 제4장. 특히 게레멕은 일련의 조치들의 등장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기는 1520년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지적 운동과 부조 제도 개혁의 원인이 된 변화들은 16세기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다. 봉건사회가 첫 번째 ‘대규모 위기’를 겪었던 1320년과 1420년 사이 100년 동안에 근대사회, 정확히 말해 ‘첫 번째 근대사회’를 탄생시킨 변화의 과정이 나타났다.”(100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노동 및 사회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인식이나 태도가 16세 사상가들에 의해 갑자기 등장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미 14세기를 전후로 많지는 않지만 몇몇 정치 및 종교 문헌들이 세속인들의 빈곤에 노동과 사회질서의 가치들을 결부시키려는 인식들과 담론들을 산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14세기 프랑스에서 반포된 일련의 칙령들은 노동이라는 가치를 빈곤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⁵⁾ 물론 이것들은 그 단호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왕정이 빈곤과 빈민 문제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제를 수반한 항구적 조치를 실행했다는 증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노동과 빈민을 연결 지으려는 초창기의 인식과 태도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빈곤과 관련한 중세 말 정치·경제 담론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나태를 경멸하고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는 빈곤에 대한 경멸적 태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13세기의 경멸적 태도들이 대체로 도덕적인 타락이나 불운, 종교적인 저주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된다면⁶⁾ 14세기를 전후로 등장하는 빈곤에 대한 경멸감은 앞선 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종종 노동 및 사회질서의 가치와 결부되었다.

담론과 인식의 변화가 즉각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분명히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16세기에 본격화된 사회적 실천을 가능하게 했던 인식과 태도들에 대한 중세 말 담론들의 원천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양적으로 빈곤하기 그지없는 담론들의 주춧돌들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적들을 가능하고 짐작

5) 프랑스에서는 최초이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351년 1월에 반포된 장 2세의 칙령이다. E. de Laurière · D.-Fr. Secousse, *Ordonnance des Rois de France de la troisième race*, t. 2, Paris : Imprimerie royale, 1729, pp. 350~380(이하 *Ord.*). 18세기 초에 간행된 본 칙령집은 페이지수 표기상 오류가 있다. 본 칙령의 실제 분량은 33페이지이다.

6) Michel Mollat, op. cit., pp. 92~97; 브로니슬라프 게레맥, 『빈곤의 역사』, 44~46쪽.

하는 일종의 ‘담론의 고고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51년 2월 말 장 2세가 반포한 칙령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본 논문은 이를 중심으로 14세기에 빈곤과 노동을 결부시키는 담론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달리 말해 빈곤에 대해 종교·윤리적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바라보던 중세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정치·경제적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변화해가기 시작했는가를 문제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II. 장 2세의 1351년 2월 칙령

왕위에 오른 지 반년이 지난 1351년 2월 초 프랑스왕 장 2세(1350-1364)는 왕국의 질서와 경제 조치에 관련된 꽤 긴 분량의 칙령을 반포하였다. 무려 65개항 252개조로 이루어진 이 칙령은 빵집, 생선가게, 방앗간, 푸줏간, 포도주 판매상, 각종 운반업자와 소생산자들, 노동자들, 숙박업 등 수 많은 직종(조합)의 노동자들의 임금과 그들이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물품의 가격, 다양한 판매 및 저장, 제조과정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⁷⁾ 방대한 양의 칙령을 큰 주제별로 묶어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7) 각주 2 참조. 이 칙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Robert Vivier, “Une crise économique au milieu du XIV^e siècle. La première grande intervention de la royauté dans le domaine économique : ses causes”, *Revue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8^e année, Librairie de science économique et sociales, 1920, pp. 215~229; Robert Vivier, “La Grande ordonnance de février 1351 : les mesures anticorporatives et la liberté du travail”, *Revue historique*, T. 138, 1921, pp. 201~214.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칙령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비비에의 연구 외에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대부분 노동과 빈민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존재만을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표 1〉 1351년 2월 장 2세 칙령의 목차

| 조 | 항 | 내 용 |
|-------|---------|------------------------------|
| 1 | 1~ 4 | 결인 |
| 2~ 6 | 5~ 55 | 제빵·제과·제분업 직종 |
| 7~ 8 | 56~ 81 | 포도주 판매 및 저장관련 직종 |
| 9~10 | 82~138 | 바다 및 민물생선 관련 종사 직종 |
| 11~12 | 139~152 | 육류 및 가금류 관련 직종 |
| 13~15 | 153~163 | 옷감 및 구두, 벨트 제작 및 판매 관련 종사 직종 |
| 16~21 | 164~172 | 포도밭 재배관련 직종 |
| 22~50 | 173~227 | 각종 운반업자들과 용역업자(노동자), 소생산자들 |
| 51~55 | 228~241 | 전문상인들 |
| 56~57 | 242~244 | 숙박업자 |
| 58~65 | 245~252 | 기타 일반적인 조치들과 파리지 관리 등 |

이 칙령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빠진 왕국의 경제질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347년에 시작되어 1350년경에 잦아 들은 흑사병과 1347년 잉글랜드군의 칼레 점령으로 일단락 지은 잉글랜드와의 전쟁은 이미 14세기 초에 위기에 봉착했던 프랑스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프랑스에서 최소 절반 이상의 인구감소를 초래한 흑사병은 심각하고도 급작스러운 대규모 노동력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는 역으로 생존한 노동력의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이어졌다. 2~3배에 달하는 이러한 급작스러운 임금상승이 이미 화폐경제에 진입한 경제구조에서 다양한 품목들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1351년 1월 30일에 작성되어 2월 초에 반포된⁹⁾ 장 2

8) Bronislaw Geremek, *Le salariat dans l'artisanat parisien aux XIII^e-XV^e siècles. Étude sur le marché de la main d'oeuvre au moyen âge*, Paris : Ed de l'EHESS, 1963, pp. 122~126.

9) “Ces presentes Ordonnances furent faites par le Roy Jean l’an mil trois cent cinquante, le penultième jour de Janvier, & publiées au mois de Fevrier suivant, l’an premier de son Regne”, E. de Laurière · D.-Fr. Secousse, *Ord.*, II, p.380.

세의 칙령은 왕국 전체에 걸친 급격한 경제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왕정이 시도하고자 했던 일련의 광범위한 조치들, 특히 수도 파리에 적용하려고 한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관련 물품들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들의 가격들이 과도하게 비싸지지 않도록 또한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그 제한을 두는가 하면 전통적 권리에 따른 특정 조합의 생산 및 판매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정책을 선포하고 있다. 즉 이 칙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안정적인 고용주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만도, 또 피고용 노동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인 직종별 조합들을 생산주체로 설정하면서도 왕국 전체의 경제질서에 대해 왕권이 개입하여 조절하겠다는 왕정 관료기구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¹⁰⁾ 이에 따르면 전통적인 조합의 권리도 또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상승의 논리도 모두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용주인 각 직종 조합원들에게나 피고용인인 노동자들에게나 모두 불만의 표적이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몇몇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조 파리 제빵업자와 제분업자의 빵에 대하여.

(5항) 판매를 목적으로 파리와 파리 외곽에서 생산하는 빵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파리시장이나 샤키투레 감사관들 중 1인은 매년 제빵업자 종사자가 아닌 자들 중 시민 4인을 선발하여 아래에 기술된 빵과 관련된 칙령을 엄수할 것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모든 불만, 특혜, 또는 부당 이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그리고 이들은 매주 두 번 파리와 파리 외곽의 빵집을 방문하여 칙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무게, 구운 상태(덜 구워지거나 잘 구워지거나), 색상(흰색이나 회갈색), 가격 등을 살펴본다. 만약 무게가 칙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색상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가차 없이(즉 한 가지 기준에라도 미달한다면), 이 빵을 생산한 화덕에 구워진 모든 빵들을 모두 신에게 바친다. 즉 그 절반은 ‘오

10) Robert Vivier, “La Grande ordonnance de février 1351”, pp. 206~209.

텔디외'의 빈민들(*pauvres de l'Hostel-Dieu*)에게, 나머지 절반은 '캥즈 뱅'의 맹인빈민들(*pauvres Aveugles des Quinze-Vingt*)에게 무상 공급된다.”¹¹⁾

“24조 가축을 이끌고 돌보는 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176항) 일정한 곡식이나 돈을 대가로 염소나 양, 또는 다른 가축을 돌보고 먹이를 주기 위해 이끌고 다니는 자들은 누구나 곡식이든 돈이든 임금을 대역병에 의한 사망 이전의 1/3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¹²⁾

“29조 유모와 그 추천인의 임금에 대하여.

(186항) 아이의 부모의 집 밖에서 아이를 돌보는 유모들은 일년에 100수를 받을 것이며 그 이상은 금지된다. …… 이를 어긴 자는 임금을 받는 자나 주는 자나 60수의 벌금을 물린다.”¹³⁾

하지만 장 2세 정부는 무조건적인 통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조정, 즉 당시 상황에서는 기준에 맞는 공급의 증대로 가격을 내리고자 하는 조치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일정 자격이 갖추어지면 마음껏 시장에서 물건을 제작 및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이는 물론 생산물에 대한 독점권이나 특권을 주장하던 여러 조합들의 이권을 해치는 조치이기 때문에 본 칙령이 일종의 ‘자유주의적’인 면모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로베르 비비에(Robert Vivier)와 레몽 카젤(Raymond Cazelles)의 지적처럼 새로운 수공업자나 상인들 또한 왕정 당국으로부터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근대적인 경제 자유주의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즉 본 칙령은 궁극적으로는 왕권에 의한 또 다른 방식의 조절, 통제방식이라

11) E. de Laurière · D.-Fr. Secousse, *Ord.*, II, p. 351. 사료의 페이지 오기로 351페이지와 352페이지가 두 번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351페이지이다.

12) *Ibid.*, p. 369.

13) *Ibid.*, p. 370.

할 수 있다.¹⁴⁾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몇몇 예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 될 수 있다.

“51조 상인인 자는 여전히 상업에 종사할 수 있고 상인이 아닌 자도 같은 권한(mesme liberté)을 지닐 수 있다.

(228항) 모든 종류의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직종이나 작업, 노동을 하거나 또는 상품을 제작하기 위해 모이거나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작품이나 상품은 품질이 좋고 충실해야 하며 …… 그들의 상품을 상기한 절차에 따라 파리에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다.”

“52조 각자는 필요한 만큼 견습노동자(apprentifs)들을 고용할 수 있다.

(229항) 모든 종류의 직종종사자, 부농, 노동자들은 …… 원한다면 견습노동자들을 적절한 시간동안 합리적인 가격(prix raisonnable)으로 자신의 작업장에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¹⁵⁾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파리시내의 도시정비 및 위생과 관련된 조항들도 눈에 띈다.

“60조 자갈과 흙 등은 먼저 국왕도로관리청에 가져온 다음 즉시 지정된 장소로 운반된다.”

“61조 파리시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돼지를 키울 수 없다.”

“62조 겨울에는 우기가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집 앞을 청소해서는 안된다.”¹⁶⁾

14) Robert Vivier, “La Grande ordonnance de février 1351”, p. 209; Raymond Cazelles, *Société politique, noblesse et couronne sous Jean le Bon et Charles V*, Genève : Droz, 1982, pp. 133~134. 그러나 현실에서 칙령 자체는 얼마나 관철될 수 있었을까? 파리로 밀려들어온 노동빈민들은 자유롭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기보다는 실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조합들의 경제권력에 고분고분해야만 했을 것으로 보인다.

15) E. de Laurière · D.-Fr. Secousse, *Ord.*, II, p. 377.

16) *Ibid.*, pp. 379~380. 62조는 프랑스의 경우 겨울이 우기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겨울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려 길이 질척거리기 때문에 우기가 끝난

이상과 같이 장 2세의 칙령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물가와 임금에만 관련된 좁은 의미의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민의 물질적 삶의 모든 부분들과 관련한 총괄적이고도 본원적인 의미의 ‘경제(Oikonomia)’, 즉 통치(gouvernement)와 일상적인 삶의 질서 확립과 관련된다.¹⁷⁾

물론 광범위한 경제질서 혼란으로 인해 왕권이 일련의 조치를 일괄적으로 선포한 것은 장 2세가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1307년 필리프 4세(1285-1314) 또한 파리지역의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칙령을 반포한 바 있고 1322년 1월 19일에는 파리시장(prévôt de Paris)인 질 아갱(Gilles Haquin)이 필리프 4세 칙령의 일부를 야간작업 및 도제견습노동과 관련하여 다시 반포하였다.¹⁸⁾ 도입부는 국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라틴어로, 실질적인 내용은 파리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프랑스로 기록된 필리프 4세의 칙령은 파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일괄적인 경제조치가 무엇보다도 ‘공익’¹⁹⁾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식량과 물품의 독과점 및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조절을 선언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1307년 칙령의 정책은 보다 소급하자면 1305년 4월 28일에 빵 가격 조절과 관련

이후에 한 번에 청소를 하는 것이 빗물배수나 청결을 위해 더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조치인 듯하다.

- 17) Oikonomia 개념에 대해서는 Giorgio Agamben, *Le règne et la gloire(Homo sacer II-2)*, Paris : Seuil, 2008 참조. 아감벤의 전체적인 철학적 구도에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감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정관리술로 지칭한 ‘oikonomia’가 로마 말기의 신학적 논의를 통해 어떻게 기독교적 ‘사목권력’으로 변화해 갔는지를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종합하여 잘 정리하고 있다(특히 2장과 4장 참조).
- 18) Jules-Marie Richard, “Ordonnance inédite de Philippe le Bel concernant les métiers de Paris(7 juillet 1307)”, *Mémoire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e Paris et de l’Île de France*, 1876, pp. 133~141; Gustave Fagniez, éd., *Documents relatifs à l’histoire de l’industrie et duc commerce en France, t. II : XIV^e et XV^e siècles*, Paris : Picard, 1900, pp. 8~15(n. 9), 45(n. 22).
- 19) 라틴어 도입부에서는 ‘pro utilitate rei publice’, 프랑스로 다시 한 번 ‘pour le commun profit’라 쓰고 있다. G. Fagniez, éd., *Documents relatifs à l’histoire de l’industrie et duc commerce en France, t. II : XIV^e et XV^e siècles*, p. 9.

된 정책을 담은 칙령²⁰⁾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문제, 특히 화폐경제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문제에 대해 왕권이 개입하여 조절해야 한다는 시도들 또는 생각들이 이미 14세기 초부터 등장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하지만 1305년이나 1307년의 칙령들은 어디까지나 가격이나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조합에 의한 독과점 문제는 물론 빈민, 노동의 문제, 파리지 정비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 1351년 2월 칙령은 앞선 경제 조치들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흑사병과 국가전쟁에 의한 전대미문의 경제적 파국 속에서 삶의 물질적 부분들의 다양한 충위들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대처를 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현실적인 강제력을 얼마나 지니고 있었는가는 매우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칙령의 내용은 흑사병으로 혼란해진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해 준다. 이를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바로 칙령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새로운 ‘직종(?)’인 ‘걸인들(mendians)’이다. 이들 다음으로 등장하는 직종(조합)이 제빵 및 제분업 관련 종사자들이라는 점은 이 걸인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며 충분한 먹거리의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자들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노동을 기피하고 있는 빈민들, 즉 걸인들이다.

특히 장 2세의 1351년 칙령은 ‘걸인(mendians)’과 ‘빈민(pauvres)’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전자가 노동을 기피하고 부랑생활을 하는 경멸스러운 자들로 노동 부과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에 따른 자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칙령 1조의 대상은 바로 이 걸인들이며 앞서 2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라는 중세 초의 의미를 내포한 ‘빈

20) E. de Laurière, *Ordonnance des Rois de France de la troisième race*, t. 1, Paris : Imprimerie royale, 1723, pp. 427~428(Ordonnance contenant Reglement touchant les Talemeliers de Paris).

민'은 기준을 어겨 몰수된 빵의 무상 수혜자로 언급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흑사병 이후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증가하게 된 부랑걸인들은 왕국 전체에 걸쳐 심각한 사회질서 문제를 야기하였다. 14세기 말에 성행한 빈민들의 집단적 비적행위가 아직 등장한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 이들은 일정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을 하는 도시 또는 농촌 주민들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장 2세는 1351년 칙령에서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할 것을, 또 그 일자리 주선 후에도 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한 생활을 할 경우 4일 동안 수감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리고 수감 후에도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이마에 인두로 표시를 하여 시에서 추방할 것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기독교적 윤리에 따른 자선도 금지되었다. 신체 건강한 걸인은 구호소에서 하룻밤만 지낼 수 있으며 사제나 귀족, 부르주아 등 모두에게 이들에 대한 적선이 금지되었다.²¹⁾

“1조 걸인들에 대하여(Des Mandians).

(1항) 파리시와 인근 도시들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남들에게 구걸하며 술집이나 유흥가에만 붙어 있는 여러 남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한다. 본 왕령포고 3일 이내로 모든 게으름뱅이(oiseux), 노름꾼(joueurs de dez), 사기꾼(enchanteurs), 거렁뱅이(truandans) 또는 걸인(mandians), 이와 유사한 자들은 건강한 몸과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남녀 구분 없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 어떻게든 종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리 시내 및 주변 도시들을 떠나도록 한다. 포고 사흘 이후에도 게으름뱅이, 노름꾼, 걸인들이 발견된다면 감옥에 나눌 동안 구금하고 그 이후로도 (일을 하지 않고 빈둥댄다면 ...) 죄수 공시대에 묶어놓으며 세 차례 적발된 자에게는 이마에 낙인을 찍어 추방령을 내린다.²²⁾

21) E. de Laurière · D.-Fr. Secousse, *Ord.*, II, pp. 352~351.(두 번째 351페이지)(1조 1-4항).

22) *Ibid.*, p. 352(정확한 번역이 아닌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의역임). 이 조항에서는 ‘빈자(pauvre)’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프랑스보다도 흑사병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에 국가의 개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곳은 잉글랜드였다. 1349년 6월 18일에 에드워드 3세(1327-1377)가 반포한 칙령과 이를 확대 및 보완하여 반포한 1351년의 「노동자헌장(Statute of Labourers)」은 흑사병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모든 성인남녀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동을 강제하며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다.²³⁾ 흑사병의 결과로 인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임금과 물가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 헌장은 같은 해에 반포된 장 2세의 칙령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²⁴⁾ 하지만 에드워드 3세의 「노동자헌장」은 장 2세의 칙령에 비해 분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간략할 뿐만 아니라 다루고 있는 직종들 또한 자세하게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프랑스가 직종별 조합을 중심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잉글랜드는 단순하게 몇 개의 관련 직업들을 한데 묶어 함께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들 외에도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자헌장」에는 결인 등과 같은 노동기피 빈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잉글랜드에서는 프랑스에서만큼 부랑빈민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아서일까?²⁵⁾ 물론 노동을 강제하는 조치가 노동기피 부랑빈민을 비켜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결인’이라는 항목 외에 수십 가지 직종을 다루고 있는 장 2세의 칙령에 비해 에드워드 3세의 ‘헌장’은 노동력 부족이라는 긴급한 현실문제에만 보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장 2세의 칙령은 기존의 칙령들을 바탕으로 왕권이 화폐에 의

23) Rosemary Horrox, tra. & ed., *The Black Death*,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p. 287~289(n. 98 The Ordinance of labourers); 312~316(n. 112 The Statute of labourers).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Maurice Keen, *England in the Later Middle Ages*, London : Routledge, 2003, pp. 146~147; Diana Wood, *Medieval Economic Though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145~146 참조.

24) Robert Castel, *Les métamorphoses de la question sociale*, Paris : Seuil, 1995, pp. 111~116.

25) 그러나 16세기 튜더 시대에는 부랑빈민이 잉글랜드 사회의 큰 골칫거리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224~233쪽.

해 매개되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조절하고 규범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장 2세의 칙령에서 부랑걸인은 단순한 노동강제의 대상일뿐만 아니라 잘 조직된 경제질서에 편입되어야 할 존재로서 다양한 직종들에 앞서 가장 먼저 언급된다.

한 마디로 1351년 2월 초에 반포된 장 2세의 칙령은 물질적인 생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의미의 경제생활에 왕정이 일관된 규범적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빈곤은 단순한 기독교적 윤리에 따른 자선의 대상으로서보다는 화폐와 노동-즉 살아 있는 노동과 죽어 있는 노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정치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노동이 어려운 ‘빈민’은 여전히 기독교적인 자선의 보호 아래 위치해 있지만 노동이 가능한 ‘걸인’들은 당연한 노동부과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빈민들 외에 또 다른 범주의 빈민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바로 13세기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만성적인 기근(*pauperisme*)이라는 상황 속에서 등장한 ‘노동빈민층(*pauvreté laborieuse*)’이었다. 사실 장 2세의 칙령이 주로 대응하고자 했던 문제는 바로 이들의 상황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들 중 일부가 노동력 부족으로 너무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생계가 극단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려는 것이 바로 장 2세와 그 측근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 곡물에 대한 투기와 매점매석 등은 최저생계선상에 위치한 이들에게 종종 자연재해가 아닌 화폐경제와 사회구조에 의한 기근을 불러일으켰다.²⁶⁾ 칙령에 기재된 직종들 중 다양한 임금노동자들과 자유로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들 대다수는 바로 이러한 노동빈민층이었으리라 추정된다.

26) Michel Mollat, *Les Pauvres au Moyen Âge*, ch. IX; 브로니슬라프 게레멕, 『빈곤의 역사』, 72~91쪽.

Ⅲ. 1350년대 전반기의 정치상황과 1354년 11월 칙령

이상과 같이 극단적으로 세세한 규범적 기준들을 명기하고 있는 2월 칙령은 흑사병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는 육중하고도 치밀한 관료기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흑사병 이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²⁷⁾ 그 내용 하나하나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다가 실질적인 통제 및 조절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었다면 그것은 비참한 현실에 대한 왕권의 정치적 이상 또는 청사진이라는 의미만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2월 칙령을 현실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치담론과 정치사상의 영역으로 이끌고 간다. 또한 칙령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칙령을 장 2세 치세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2월 칙령의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공익’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키케로적 명분은 물론이거니와 ‘왕국의 정의와 평화’라는 기독교적 대의를 위해서였을까? 보다 현실에 맞는 장 2세의 구호는 바로 14세기 내내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되었던 ‘왕국의 개혁(réforme du royaume)’이었다.²⁸⁾ 이상적인 루이 9세 시절의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개혁은 사실 왕정과 귀족, 부르주아들에게는 서로 다른 동상이몽의 이상향이였다. 그럼에도 몇 가지 현실감 있는 이미지는 가장 기독교적인 단일한 왕권 아래 풍요를 누리는 왕국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필리프 6세 시기의 화폐개주를 청산하고 양화로 복귀하는 것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

27) 예를 들어 칙령 반포 이후 14세기 중반 노동자의 임금에 칙령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지불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2배 이상 지불되는 경우가 많았다. R. Vivier, “Une crise économique”, p. 222; B. Geremek, *Le salariat*, p. 123의 그래프 및 pp. 134~135.

28) Raymond Cazelles, “Une exigence de l’opinion depuis saint Louis : la réformation du royaume”, *Annuaire-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e France* année 1962-1963, 1964, pp. 91~99.

책들 중 하나였다.²⁹⁾ 여기에서 양화로의 복귀란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고정 소득을 취하던 귀족계층 중심의 경제질서 구축을 의미했으며 실제로 이들은 필리프 4세 이래로 화폐 약화를 크게 비판해 왔다.³⁰⁾

1351년은 바로 부왕 필리프 6세의 실정과 온갖 재난들을 뒤로하고 새로 즉위한 장 2세가 본격적인 자신의 정치적 꿈을 펼치기 위해 꿈에 부풀어 있던 시기였다. 특히 잉글랜드와의 전쟁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장 2세 정부로서는 부왕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왕국의 개혁을 기치로 내세워 귀족과 고위성직자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해야만 했다. 이들에게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한다면 개혁의 기치 아래 과세를 통한 재정이 확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폐해진 왕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야만 했다. 즉 왕국 내 경제질서와 인민들의 물질적 조건의 안정을 바탕으로 장 2세 정권은 신분회의의 동의 아래 왕실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정이 이해하는 바대로의 ‘개혁’과 ‘전쟁’을 추진하고자 했다.³¹⁾

29) Raymond Cazelles, “Quelques réflexions à propos des mutations de la monnaie royale française(1295-1360)”, *Moyen Âge*, Vol. 72, n. 1, 1966, pp. 90~100(필리프 6세의 화폐개주).

30) Joseph R. Strayer, “Consent to Taxation under Philip the Fair”, Id & Charles H. Taylor, *Studies in Early French Taxation*, Cambridge, 1939, pp. 100~101; Raymond Cazelles, “La stabilisation de la monnaie par la création du franc(décembre 1360) — Blocage d’une société”, *Traditio*, Vol. 32, 1976, pp. 294~295; 성백용, 「14세기 후반-15세기 초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국가재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99~100쪽. 부르주아에게 화폐개주는 다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화폐개주로 인한 불안정성의 증대는 교역질서에 해가되기도 했지만 투기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반면 장기적인 양화 발행은 귀금속의 축장이나 유출로 인한 화폐결핍을 초래하여 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었다. 하층민들에게는 화폐 약화가 지대의 실질적인 감소와 같은 대체적으로 경제생활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1) R. Cazelles, *Société politique*, p. 133. 이 내용은 1354년 7월 5일에 상리스 주민에게 반포된 조세관련 칙령에 언급되고 있다. E. de Laurière · D.-Fr. Secousse, *Ord.*, II, p. 557 참조.

그리하여 1351년 2월 파리에서 장 2세가 소집한 신분회의에서는 과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왕실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왕참사회가 수시로 소집되었다. 그리고 1351년 10월에는 필리프 4세가 1303년 3월 23일에 반포했던 「왕국개혁을 위한 대칙령(Grande ordonnance pour la réformation du royaume)」을 재반포함으로써 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구하고자 하였다.³²⁾ 이는 카페왕조와 발루아왕조 사이의 혈연적 연속성뿐만 아니라 루이 9세로 대표되는 개혁의 이상을 장 2세가 대대로 이어받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필리프 4세의 이 대칙령은 일단 축자적인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각 지방의 성직자, 귀족, 부르주아들과 마찰을 빚어 종종 탄원의 대상이 된 중앙 및 지방의 왕정 관료들의 권력남용을 제한하고 각 지방의 성직자, 귀족, 부르주아들의 전통권리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왕권이 스스로 왕권 관료기구 제한이라는 자기규제를 선포하는 것인데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반포하는 국왕은 이상적인 루이 9세의 이미지를 전유하는 효과를 취하게 된다.³³⁾ 더구나 1350년 8월에 강화된 화폐체계는 양화로 상징되는 루이 9세 치세를 상징하며 장 2세 통치 초반의 개혁성을 입증하고 있었다.³⁴⁾ 마지막으로 1351년 11월 6일에 반포된 ‘성신기사단(星辰騎士團; Ordre de l’Étoile)’의 조직을 통해 전통적인 봉건귀족들을 왕권 아래 결집시키려 하였다.³⁵⁾ 1351년 내내 새로 즉위한 국왕 장 2세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부왕 치세에 와해된 국왕중심의 질서들을 조직해

32) E. de Laurière · D.-Fr. Secousse, *Ord.*, II, pp. 450~464; R. Cazelles, *Société politique*, p. 144.

33) Jean Favier, *Philippe le Bel*, Paris : Fayard, 1988, pp. 99~100.

34) R. Cazelles, “Quelques réflexions”, pp. 97~99; *Société politique*, p. 136.

35) Yves Renouard, “L’Ordre de la Jarretière et l’Ordre de l’Étoile. Étude sur la genèse des Ordres laïcs de Chevalerie et sur le développement progressif de leur caractère national”, *Moyen Âge* T. 55, La Renaissance du livre, 1949, pp. 281~300. 정식 명칭은 노블메종드라노트르담 기사단(Ordre de Notre-Dame-de-la-Noble-Maison)으로 이 기사단 또한 1351년 2월 왕령처럼 잉글랜드에서 에드워드 3세가 조직한 가터기사단을 모델로 조직되었다.

나가고자 하였다. 물론 그는 반세기 전 필리프 4세와 달리 성직자, 귀족, 부르주아들과 같은 정치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견해들과 여론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다.

하지만 1351년 장 2세가 반포한 이상과 같은 모든 조치들은 1351년 2월 칙령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항구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힘든 왕정만의 원대한 포부라는 성격을 지닌다. 장 2세가 재반포한 필리프 4세의 대칙령은 애초에 상징적 가치가 강한 것이었다. 성신기사단 또한 왕국의 정예기사단이라는 장 2세의 포부와 달리 여전히 지방분권적이고 아직은 궁정식 예절에 낯선 거친 귀족기사들로 인해 곧 그 빛이 바래게 되었다. 어쨌든 1352년에서 135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장 2세 및 그의 참사회가 이끄는 프랑스 왕정은 그럭저럭 개혁의 외피를 두르고 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고 잉글랜드와는 새로운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1354년에 들어와 장 2세 정부는 마비되기 시작하였다. 잉글랜드왕 에드워드 3세에 뒤이어 나바라왕 샤를 2세³⁶⁾가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왕위계승권을 주장하며 왕국을 내전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몇 해 동안 장 2세 정권의 개혁속도에 실망했던 많은 정부요인들, 특히 참사회원들 대다수가 샤를 2세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잉글랜드와 정치·경제적으로 더 가까웠던 노르망디, 플랑드르, 아르투아의 많은 귀족이 샤를 2세를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샤를 2세는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휴전협정을 방해하며 은밀히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국 분할점령을 논의하기까지 하였다.³⁷⁾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장 2세는 9월 26일 랭스 대성당에서 축성식 4주년 기념식을 거행한 후 10월 20일 파리로 돌

36) 루이 10세(1315-1316)의 외손자로 남성왕위계승은 관례화되었지만 아직 남계상속원칙이 정착되지 않은 프랑스에서 샤를 2세는 루이 10세의 딸이자 나바라여왕이었던 잔의 아들로서 왕위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바라왕이었지만 그의 정치무대는 프랑스의 샹파뉴와 노르망디의 영지였다. 그는 1360년대 중반 샤를 5세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후 본격적으로 나바라에 거주하게 된다.

37) R. Cazelles, *Société politique*, pp. 157~165.

아와 샤를 2세 지지파(나바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따라서 1354년 11월은 장 2세로서는 위기에 처한 왕권과 사회질서를 재확립해야 하는 시기였다. 게다가 1354년 4월 6일에 샤를 2세파의 주도로 조인된 긴 조약(Traité de Guines)은 1355년 4월 1일까지를 휴전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야만 했다.³⁸⁾ 프랑스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은 이제 전쟁으로 향하게 되었다.”³⁹⁾ 잉글랜드에서도 1347년 휴전 이후 웨일즈공 에드워드를 필두로 약탈 전쟁 재개를 열망하는 세력들이 준동했고 이제 전쟁 재개는 시간문제가 되었다.⁴⁰⁾ 이에 장 2세는 샤를 2세를 지지하는 노르망디 귀족들에 대한 원정을 단행하는 동안 두 개의 칙령을 반포하였다. 1354년 11월 14일 칙령에서 장 2세는 1352년에 약화시켰던 화폐들을 다시 강화한다는 조치와 함께 다른 화폐들의 사용 및 화폐의 소재인 금·은의 변형을 금지하였다. 강화된 화폐의 소재인 금·은이 그대로 화폐 이외의 형태로 축장되는 사태를 막고 화폐로서 유통시키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만든 화폐들은 곧바로 장 2세 정부의 전쟁자금으로 사용되었다.⁴¹⁾

두 번째 칙령은 정확한 날짜 없이 11월에 반포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14일 이후에 반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실 1351년 2월 칙령과 마찬가지로 왕국의 경제와 관련하여 왕권이 개입하고 있는 두 번째 칙령으로 화폐강화 조치에 따른 생필품, 상품,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루고 있다.⁴²⁾ 하지만 1351년 2월 칙령이 상품과 임금의 가격에 대한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354년 11월 칙령은 잉글랜드의 「노동자헌장」과 마찬가지로 노동기피자에 대한 처벌과 노동강제에 주된 초점

38) Ibid., pp. 162~163; pp. 193~194.

39) Ibid., p. 185.

40) M. Keen, *England in the Later Middle Ages*, pp. 110~112.

41) E. de Laurière · D.-Fr. Secousse, *Ord.*, II, pp. 559~563; R. Cazelles, *Société politique*, p. 185.

42) Ibid., pp. 563~566.

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동기피 결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급상승한 임금의 혜택으로 술집(taverne)에 머무르며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선도 구호소도 허락되지 않으며(3항) 모든 직종의 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을 받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해야 한다(4항, 6항). 이를 어기는 나태한 노동자들은 벌금을 내거나 감금을 당하며 심지어 일을 할 수 있는 주간에는 음주와 놀이가 금지된다(5항).⁴³⁾ 또한 각종 세입과 임금 지불은 새로 발행된 화폐로 지불될 것을 명령하며(7항) 마지막에는 이 모든 사항들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려 깊으며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행실 바르고 현명하며 신중한 사람들(bonnes, sages et discrettes personnes congnoissans et circonspectes en teles choses et saichans l'estat des lieux)”이 각 지역의 성직자들과 귀족들에게 충실히 알려줄 것을 명하고 있다(10항).

이 칙령은 일단 노동자보다는 고용주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⁴⁾ 하지만 이 칙령에는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보다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이 칙령에 앞선 화폐강화 칙령과 연결 지어 본다면 노동과 더불어 왕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화폐의 유통이다. 다시 한 번 개혁을 상징하는 양화의 발행은 왕권의 상징적 재확립을 강조하는 동시에 왕정이 운용하는 재정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왕국에 새로운 경제질서를 부과하려는 시도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 새로운 경제질서는 다름 아닌 가능한 최대한의 노동력을 움직이면서 화폐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장 2세 정부는 양화를 발행하면서도 노동의 결핍과 화폐의 축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1354년 11월 칙령은 이전 것과 달리 잘 지

43) Ibid., p. 565 : “(5) Item. Que sechiver ladite oisiveté desdits Ouvriers, deffendu est etroitement, que aucuns d'iceux n'aillent boire, ne employer leur temps en tqvernes ou autre part, ou exercent jeux deffendus aux jours ouvriers ……”

44) 브로니슬라프 게레맥, 『빈곤의 역사』, 108쪽.

켜질 수 있었을까? 게레멕이 제시하고 있는 임금 그래프는 여전히 칙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면서도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듯이 보인다.⁴⁵⁾ 하급노동자인 석공보조공의 경우 임금이 흑사병 이후 한 번 상승한 임금이 1352년 이후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들을 고용했던 정식 석공의 경우에는 1355년의 임금이 이미 상승추세에 있던 1352년 임금의 50%이상 상승했다는 점이다. 어쨌든 1354년 11월의 칙령 또한 현실감과 현실 적용력이 취약한 원대한 포부에 그치고 말았다. 1355년에 이 칙령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355년 말의 총신분회의가 국왕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⁴⁶⁾ 그리고 1356년 9월에 벌어진 푸아티에의 패전으로 장 2세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사실은 이 칙령의 짧은 운명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351년 2월과 1354년 11월에 등장한 두 칙령들은 사실 중세정치사의 맥락에서 비추어 봤을 때에는 다소 갑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결인과 빈민의 구분, 노동의 의무, 노동과 상품의 가격과 같은 경제적 사안들이 경제질서 문제 속에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왕권이 적극 개입하여 통제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13세기까지 전개된 중세정치사상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 때문이다. 왕국 내 인민들을 목자처럼 돌본다는 기독교의 사목적 이상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몇몇 계기들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왕 개인의 윤리 문제였을 뿐이었다. 또한 중세의 왕들이 전 왕국의 인민들에 대한 물질적 조건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왕권이 가용(착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조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⁴⁷⁾ 과연 화폐와 노동을 중

45) B. Geremek, *Le salariat*, p. 123의 그래프.

46) R. Cazelles, *Société politique*, ch. XXVI.

47) Ferdinand Lot, "L'état des paroisses et des feux de 1328", *Bibliothèque de l'Ecole des Chartes* T. 90, École des archives, 1929, pp. 51~107; pp. 256~315. 필리프 6세는 즉위 후 프랑스 왕국 전역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14세기에 이루어진 왕권 중심의 관료제 급성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심으로 왕국 전체의 물질적 생활과 경제상황 일반을 육성 및 조절할 수 있고 또 그래야한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이제 빈곤의 문제가 종교적 책무에서 국가적 정책으로 이행하게 되는 사상의 단초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IV. 빈곤과 부, 왕국의 경제

13세기-14세기에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어떠한 사상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응당 성직자들의 몫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와 같은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들은 성직자들 중에서도 옥스포드와 파리 대학에서 수학한 탁발 수도회 출신의 사상가들이었다. 13세기 중반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이 유입된 이후 세속 정치공동체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것으로 긍정성을 부여받기 시작했다. 통상 ‘레스푸블리카(res publica)’로 지칭되기 시작한 이 정치공동체는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이르면 그것이 단순한 공동체 공동의 이득, 즉 ‘공익’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개인의 윤리적 가치를 뛰어넘는 ‘공공선’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⁴⁸⁾

그렇다면 상업활동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논의는 어떠했을까? 잘 알려진 바대로 중세사회에서 교역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수반되었으며 적극적인 긍정성을 부여받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상업활동의 이윤 획득과 고리대금이 혼동되는 경우 강하게 부정되기 십상이었고 양자가 구분되는 경우라도 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장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상인들과 연관되는 이자대부, 상업활동, 부유함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가치

48) 홍용진, 「14세기 전반기 프랑스의 정치현실과 공공성」, 『서양사론』, 제110호, 2011. 9, 30~37쪽.

관에서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졌다.⁴⁹⁾ 그럼에도 13세기에 들어와 세속 정치공동체의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몇몇 소수의 학자들은 상업활동을 정당화하는 생각들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상업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들이 허상에 불과한 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탐욕을 비난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정당화는 공동체의 생계를 위한 물자의 유통과 배분에 초점을 맞춘다. 잉글랜드의 토마스 오브 초범(Thomas Chobham, 약 1160-1223/26)이나 알렉산더 오브 헤일즈(Alexander of Hales, 약 1185-1245)는 13세기 초에 이러한 관점들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대표적인 자들이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상인의 이득이 물자유통과정 상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라는, 즉 상업은 정당한 노동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⁵⁰⁾ 잉글랜드에서 개진된 이러한 이론들은 파리대학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도 전수되었다. 그가 볼 때 상업적 노동에 대한 대가는 개인과 가족을 위한 적절한 이득과 빈민에 대한 자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물자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는 ‘공익’과 관련될 때 정당성을 획득한다.⁵¹⁾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이자 필리프 4세의 가정교사였던 에지디우스 로마누스⁵²⁾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공동체론에 입각하여 『군주통치론

49) 남종국, 「12세기 교회법학자 그라티아누스의 경제윤리」, 『대구사학』, 11권, 2013, 132~157쪽; 「12~3세기 이자 대부분 둘러싼 논쟁 : 자본주의의 서막인가?」, 『서양사연구』 52권, 2015, 5~38쪽.

50) Diana Wood, *Medieval Economic Though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116~117; Odd Langholm, *The Legacy of Scholasticism in economic thought : Antecedents of choice and powe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123~124.

51)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I^a-IIae q. 77 a. 4 co. (Available : <http://www.corpusthomicum.org/sth3061.html#42257>, 2017.3.30) : “Et sic negotiatio licita reddetur. Sicut cum aliquis lucrum moderatum, quod negotiando quaerit, ordinat ad domus suae sustentationem, vel etiam ad subveniendum indigentibus, vel etiam cum aliquis negotiationi intendit propter publicam utilitatem, ne scilicet res necessariae ad vitam patriae desint, et lucrum expetit non quasi finem, sed quasi stipendium laboris.”(강조 필자)

(*De regimine principum*)』에서 산발적으로 그의 견해를 피력한다. 먼저 인간은 경제적으로 자립적이기 못하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식량과 물품들을 교환하고 공급하는 경제적 자립 단위로 공동체가 필요하다.⁵³⁾ 그리고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과 군주의 임무들 중 하나는 자신의 신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통치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목표인 공공선의 달성을 향한다.⁵⁴⁾ 그리고 정치공동체 또는 왕국의 성격을 논하는 장에서 에지디우스는 이러한 공동체 전체에 필요한 물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판매와 구매, 교역과 계약과 같은 상업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⁵⁵⁾ 또한 정치공동체의 질서와 최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유하지도, 너무 빈곤하지도 않은 중간 계층이 많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이들에게 왕명과 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⁶⁾ 즉 에지디우스 로마누스는 왕국의 경제적 부의 연관성 아래 교역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는 왕국의 경제생활과 질서에 법보다 우월한 왕권이 열

52) 에지디우스 로마누스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홍용진, 「에지디우스 로마누스의 “군주통치론” : 중세 말 프랑스에서 정치 텍스트의 생산과 유통」, 『서양중세사 연구』 제27호, 2011, 247~259쪽 참조.

53) Aegidius Romanus(Colonna), *De regimine principum Libri III*, Roma, 1556[Frankfurt : Minerva, 1968], f.129r-v(L. II, p. I, cap. I) : “Frumentum ergo, quod a natura producitur & si esset sufficiens cibus animalibus aliis : homini autem non est sufficiens cibus, nisi praeparetur & depuretur. …… Et quia ad haec omnia una sola persona non bene sufficit, ideo ut homo ratione victus sufficiat sibi in vita, indiget societate, ut unusquisque suppleat alterius defectum. …… Bene ergo dictum est …… homo est naturaliter animal sociale.”

54) Ibid., f.179r(L. III, p. II, cap. VIII) : “Decet ergo reges et principes sic regere civitates & regna, ut soibi subiecti abundant rebus exterioribus prout deserviunt ad bene vivere, & ad consequendum finem intentum in vita politica.”

55) Ibid., f.320v(L. III, p. II, cap. XXXII) : “…… quia nonnullus homo habet omnia sufficientia ad vitam, nisi commutete ea quibus bundet in illa a quibus deficit, ideo necessariae fuerunt emptiones, venditiones, commutationes, & contractus, quae omnia quia facilius fiunt hominibus simul conviventibus, constituta fuit civitas, ut homines simul conviverent.”

56) Ibid., f.322r-325r(L. III, p. II, cap. XXXIII-XXXIV).

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의 기반을 마련한다.

종합적으로 이상의 논의들은 정치공동체의 풍요로움을 교역활동과 연관시키면서 상인들을 자선이나 보시의 가능성이라는 윤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부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정치공동체 전반의 부의 안정성이 정치적 안정성의 기반이 된다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논의, 특히 에지디우스 로마누스의 논의는 14세기 프랑스 왕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들로 1351년 2월 및 1354년 11월 왕령들의 지적 배경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 충분한 교역활동이 왕국의 부 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왕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에지디우스 논의는 몇 가지 점에서 장 2세 왕령들에, 나아가서는 필리프 4세의 왕령들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들을 온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듯이 보인다. 즉 장 2세의 왕령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 즉 가격형성과 왕권에 의한 가격조절의 문제, 화폐유통의 문제, 조합이건 개인이건 개별적 경제행위자들에 대한 고려, 노동 또는 경제활동의 당위성, 그리고 노동결과물의 가치평가 문제 등에 대한 정교한 논의들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들어 일군의 중세사가들은 이러한 경제 개념들의 등장이 바로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프란체스코 수도회 내 영성과 이론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⁵⁷⁾ 특히 이들은 13세기 말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활동하면서 청빈논쟁의 이론적 주역을 담당했던 페

57) 먼저 선구적인 연구로는 Lester K. Little의 저서를 들 수 있다. *Religious Poverty and the Profit Economy in Medieval Europe*,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본격적인 연구들로는 Joel Kaye, *Economy and Nature in the Fourteenth Century. Money, Market Exchange and the Emergence of Scientific Though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Giacomo Tedeschini, aut., Nathalie Gailius & Roberto Nigro, tra., *Richesse franciscaine. De la pauvreté volontaire à la société de marché*, Paris : Verdier, 2008; Luca Parisoli, dir., *Pauvreté et Capitalisme. Comment les pauvres franciscaines ont justifié le capitalisme et le capitalisme a préféré la Modernité*, Palermo : Officina de Studi Medievali, 2008 등을 들 수 있다.

트루스 요아니스 올리비(Petrus Joannis Olivi, 약 1248-1298)의 사상에 주목한다.⁵⁸⁾ 빈곤의 역사에서 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발적 빈곤’은 사실 세속세계의 사회·경제적 빈곤문제와는 다른 종교·윤리적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상화된 빈곤’이라는 이해는 중세 빈곤의 희한한 한 모습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13세기 동안 일부 프란체스코회 스콜라학자들에게는 단순한 성직자들의 윤리이기를 넘어서서 노동가치나 화폐가치 등과 같은 경제문제들을 제기하는 세계관의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애초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남긴 계율들은 수도회 형제들에게 구걸과 노동을 엄격히 부과하고 어떠한 재부의 축적이나 금전상의 이득도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못 박고 있었다. 특히 수도사들은 화폐를 직접 손에 대서도 안 되었으며 늘 예수의 청빈한 삶에 따라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영위해야 했다. 또한 프란체스코에 따르면 노동의 결과물인 상품들은 허구적 가치인 화폐로 측정 불가능하였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도는 주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달라지고 화폐로는 객관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의 결과물이나 노동은 그 유용성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또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적 욕구나 필요는 결코 화폐(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프란체스코에게 ‘빈곤’은 두 가지 의미를 더 지니게 된다. 한편으로 빈곤은 화폐가치와 무관하게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유용성의 가치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들이 인간 공동체 전체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물품들인가를 이해하

58) 현재 공식 프랑스어로는 피에르 드 장 올리비(Pierre de Jean Olivi)라고 표기한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사료상 라틴어 표기로만 확인가능하며 프랑스어 이름은 이를 토대로 현재 기준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다. 각국마다 서로 다른 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맞춤법이 없던 중세의 오크어 표기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다. 1998년에 올리비를 주제로 열린 국제 콜로키움에서는 라틴어 표기를 권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Pierre de Jean Olivi로, 영미권에서는 Peter of John Olivi로 통용되고 있다. Alain Boureau · Sylvain Piron, eds., *Pierre de Jean Olivi(1248-1298). Pensé scolastique, dissidence spirituelle et société(Actes du colloque de Narbonne, mars 1998)*, Paris : Vrin, 1999, p. 9, note 1 참조.

는 것을 뜻한다.⁵⁹⁾

하지만 도시에서 활동하는 탁발수도회들 중 하나였던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자신들의 자발적 빈곤은 물론이거니와 점점 발전해 나가는 세속세계의 상업활동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중해 무역의 거점들이었던 남부 프랑스의 몽펠리에(Montpellier)나 페르피냥(Perpignan)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수도사 페트루스 요아니스 올리비는 「계약론(Traité des contrats)」 등의 글들을 통해 독특한 경제사상들을 펼쳐나갔다. 한편으로는 그는 수도사들은 물론 성직자들 모두가 영적인 충만으로서의 자발적 빈곤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성직자가 아닌 세속인들의 경우 빈곤은 물질적 결핍에 불과하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 일종의 전 세속세계에 대한 자선과도 같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렇듯 올리비의 논의는 후일 프란체스코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윌리엄 오브 오컴(William of Ockham, 1285-1347)의 사상을 선취하는 성·속 분리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주장하는 성직자들의 자발적 빈곤은 성·속 모두에 걸친 공통의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에게 성직자들의 자발적 빈곤은 프란체스코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어떤 물건의 실질적 유용성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⁶⁰⁾

그러나 올리비는 프란체스코와 달리 화폐의 유용함에 대해서는 긍정을 피력한다. 먼저 그는 앞서 살펴본 일부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상업활동

59) G. Tedeschini, *Richesse franciscaine*, pp. 80~98.

60) Ibid., pp. 126~131. 게오르크 짐멜은 프란체스코 청빈사상의 경제적 의의를 처음으로 발견한 학자들 중의 하나다. 그에 따르면 “처음으로 빈곤을 독립적인 가치 또는 가장 심층적인 내면적 요구의 상관물로 만든 것은 바로 프란체스코 수도회였다. …… 여기에서 빈곤은 적극적인 소유물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최고의 재화들의 획득을 매개했으며, 그 재화들에 대해 돈이 세속적이고 경멸할 만한 재화들에 대해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했다. 돈(화폐)과 마찬가지로 빈곤은 일련의 실천적인 삶의 가치들이 흘러들어가서 풍성한 자양분을 얻고 다시 흘러나오는 저수지였다.”, 게오르크 짐멜 저,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길, 2013, 423쪽.

의 분배기능에 긍정성을 표한다. 그에게 화폐는 그것이 재물로 축적되고 축장되지 않는 한 가치를 측정하는 계산가능성을 표현하는, 즉 가격을 매기는 매우 유용한 매개물이 된다. 그의 논의에서는 화폐를 매개로 한 물자의 순환과 공급으로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며 바로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공적 전문가를 바로 상인들이 담당하게 된다.⁶¹⁾ 올리비가 바라보는 상인들은 고리대금업자와 혼동되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니다. 그가 지칭하는 상인들이란 일정 공동체의 경제적 문제를 교역을 통해 해결하는 경제 차원의 공익담당자들이다. 그가 그리는 이상적인 상인이란 신용에 기반을 두고 거래를 행하며 사익을 목적으로 화폐를 축장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여 재화를 순환시키는 공적사업을 담당한다. 올리비는 사적 이득의 탐닉으로 축장된 돈이 아닌, 이처럼 공적인 교역을 목적으로 투자되는 돈을 바로 ‘자본(capitale)’이라 부른다.⁶²⁾

올리비가 볼 때 빈곤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노동이나 상품의 가치, 즉 유용성은 사실 어떤 공동체가 시공간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늘 변동한다. 가치는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때그때 마다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즉 가격은 사회적이고 가변적인데 이 사회성과 가변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일정한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상인들이 담당한다. 상인들은 서로 다른 가치들을 연결하여 화폐로 환산하는 교환가치와 교환의 장인 공적인 시장을 구축한다. 그리고 거대한 경제순환관계를 만들기 위한 경제활동, 특히 상인들의 노동이 그 자체로 긍정된다.⁶³⁾

61) J. Kaye, *Economy and Nature*, pp. 141~142; G. Tedeschini, *Richesse franciscaine*, pp. 140~142.

62) J. Kaye, *Ibid.*, pp. 118~123; G. Tedeschini, *Ibid.*, pp. 168~170 : “Illud auo in firmo proposito domini sui est ordinatum ad aliquod probabile lucrum, non salum habe rationem simplicis pecunie seu rei, sed eiam ultra hoc quemdam rationem seminalem **lucri quam communiter capitale vocamus**(우리가 공통적으로 자본이라고 부르는 이익) ……”(p. 170, 각주 1에서 재인용).

63) G. Tedeschini, *Richesse franciscaine.*, pp. 156~157.

올리비의 이론은 많은 프란체스코회 영성과 사상가들에게 전파되었다. 둔스 스코투스(Duns Scotus, 1266-1308)와 그의 제자 프랑수아 드 메론(François de Meyronnes), 기랄 오(Guiral Ot, 1285-1349) 등의 프란체스코 사상가들과 수많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올리비로부터 물려받은 성직자의 자발적 빈곤과 세속의 부에 대한 담론들을 프랑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전파하고 다녔다.⁶⁴⁾ 이렇게 올리비를 비롯한 영성과 사상가들의 이론은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빈곤을 기준으로 시장과 가격, 노동의 가치, 경제전문가인 상인들의 활동 등에 대한 개념들을 창출해 낸다. 그러나 동시대인인 에지디우스 로마누스와는 다르게 이들에게 정치공동체를 위한 부의 창출이나 왕권의 개입이라는 생각은 매우 희박하다. 어쨌든 올리비나 프란체스코 영성과 사상가들의 생각과 관련해서 던져야 할 질문은 지성사적인 것을 넘어서 정치·사회사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료의 부족으로 답하기는 매우 힘들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이들의 생각은 당대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을까? 특히 파리의 위정자들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이를 증명할 사료들은 그리 명확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몇 가지 지표들이 프랑스 위정자들에 대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318년 3월 19일 필리프 5세(Philippe V, 1316-1322)는 왕국 개혁의 일환으로 화폐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랑그도일 지역 도시대표들로 이루어진 신분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 개최를 위해 1317년 12월 15일에 발송된 소집장에서 필리프 5세는 각 도시 당국에 “화폐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대 도시들의 대표 3-4인들을 선발하여” 신분회의에 참석시킬 것을 명하고 있다.⁶⁵⁾ 1329년에는 필리프 6세가 왕국개혁의 일환으

64) Ibid., pp. 174~176.

65) Robert Fawtier · J. Guerout, *Registres du Trésors des Chartes, t. II : Règnes des fils de Philippe le Bel, 1^{ère} partie : règnes de Louis X le Hutin et de Philippe le Long*, Paris : Arch. nat., 1966, n. 1503-1504; E. de Laurière · D.-Fr. Secousse, *Ord.*, t. 1, p. 755 : “Nous vous mandons & commandons, que vous eslisiez trois

로 화폐 강화를 내세우며 도시대표들과 함께 ‘화폐에 대한 전문가’들을 언급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던 도시대표들을 14세기 전반기에는 이미 화폐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들의 역할을 공공의 이익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와 생각들로 비추어 봤을 때 당시 프랑스 왕정의 경제정책들이 프란체스코 영성파의 경제담론들과 무관해보이지는 않는다.⁶⁷⁾ 특히 프랑스 왕실과 아비뇽 교황 사이의 긴밀한 관계들은 남부 프랑스에서 널리 퍼진 영성파의 담론들이 파리 왕궁까지 자연스럽게 도달했을 정황상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⁶⁸⁾ 앞서 제시한 1351년 2월 칙령의 많은 내용들은 이와 같은 영향관계를 잘 보여준다.

ou quatre bonnes personnes de vostre Ville, qui miex se cognoistront au fait des monioies, & les envoyez par devers nous, à tout vostre bon avis, sur les choses dissus dittes à Paris au Diemanche après prochains brandons ……”

- 66) E. de Laurière · D.-Fr. Secousse, *Ord.*, t. 2, pp. 27~28 : “Considerans entre les autres choses, que la reformation des monioies est grandement necessaire et convenable, especialment en l’estat, où elles sont à present, dont notre peuple est et a esté moult grandement grevez et domagiez, et seroit encore de plus en plus, si remede n’y estoit mis. Avons mandé et fait convocations de Prelats, Barons et bonnes Villes et autres saiges et connoissans en tiex choses avoir avis sur ce avec eux, afin que lesdites monioies soient reformées, ……”; Henri Hervieu, *Recherches sur les premiers états généraux et les assemblées représentatives pendant la première moitié du quatorzième siècle*, Paris : E. Thorin, 1879, pp. 190~194.
- 67) 홍용진, 「중세 ‘교회(Ecclesia)’ 개념의 재파열 : 프란체스코회 영성파 - 13세기 말~14세기 초 남부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사 연구』 제32호, 2015, 9~14쪽.
- 68) 영성파 내에서 기랄 오는 교황순종파로 요한 22세(1316-1334) 당시 프란체스코 수도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요한 22세와 필리프 5세는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후 발루아왕조의 필리프 6세, 장 2세와 아비뇽 교황들 사이의 관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클레멘스 6세(1342-1352)는 필리프 6세 궁정의 참사회원이었다가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세자였던 장은 종종 아비뇽에 기거하며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필리프 5세와 요한 22세에 대해서는 홍용진, 「필리프 5세 통치 시기 정치적 문제들과 왕권의 대응」, 『서양중세사연구』 제29호, 2012. 3, 116~120쪽. 장 2세에 대해서는 R. Cazelles, “Jean II le Bon : quel homme ? quel roi ?”, *Revue historique* T. 509, PUF, 1974, pp. 5~26; François Avril, “Un moment méconnu de l’enluminure française : le règne de Jean le Bon”, *Archéologia* Vol. 162, Éditions Faton, 1982, pp. 24~31.

V. 맺음말을 대신하여 : 담론의 유적들 속에서

1351년 2월에 반포된 장 2세의 칙령은 프랑스에서 노동을 기피하는 빈민, 즉 걸인에 대한 노동강제부과를 표현하고 있는 최초의 칙령이었다. 그것은 종종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중세 말 노동 기피 빈민에 대한 혐오와 경멸, 왕정의 억압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단편적으로 인용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중요성과 더불어 본 글이 제기하는 질문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태도와 생각이 프랑스 왕정에 형성되었을까하는 것이었다. 13-14세기 동안 왕권은 기독교적인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자선을 교회는 물론 자신의 정치윤리로 전유해 나가고 있었다.⁶⁹⁾ 하지만 14세기부터 왕정당국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노동가능성을 그 기준으로 삼으면서 자선의 대상자와 노동부과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1351년 2월 칙령이 잉글랜드의 「노동자헌장」과는 다르게 단순히 걸인이나 노동기피자에 대한 노동부과에 머무르지 않고 물질적 생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왕정의 개입과 조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칙령에서 빈곤과 노동의 문제는 흑사병 이후의 노동력 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왕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왕권의 개입과 조절을 받아야 할 한 요소로서 자리매김 된다. 이는 왕국의 통치를 담당하는 자들이 이 시기에 들어와 빈곤과 노동을 종교-윤리적 범주가 아닌 정치-경제 범주에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연히 1351년 2월 및 1354년 11월 칙령의 정치적 배경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14세기의 경제위기와 인구위기, 전쟁, 조세 등과 같은 복잡다단한 정치·경제적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 수준의 전쟁을 위한 국가재정의 등장, 이를 위한 국가의 부 증대

69) 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Priscille Aladjidi, *Le Roi, père des pauvres. France XIII^e-XV^e siècle*, Rennes, PUR, 2008 참조.

와 경제 질서 등에 대한 관심이 13세기 말에 전개되고 있던 성직자들 사이의 다양한 담론들을 변용하여 전유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1351년 2월의 칙령은 경제질서에 대한 왕권의 개입과 조절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에지디우스 로마누스 등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과 조절이 이야기되고 있는 왕국의 경제는 가격과 노동가치, 화폐를 매개로 한 시장질서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본 글은 이러한 개념들의 활용이 다른 한편으로 페트루스 요아니스 올리비의 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하고자 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것들로 1351년 2월 칙령이나 14세기의 빈곤과 노동에 대한 관점들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도 탐색되지 못한 수많은 담론의 유적들에 대한 고고학이 필요한 실정이다.⁷⁰⁾

70) 한편 다음과 같은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정치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목표로 하는 에지디우스의 논의는 차지하고라도 프란체스코회의 이른바 ‘경제’ 담론들은 종교-윤리적 범주에 더 가까운 논의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 문제는 본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를 위해서는 이후의 서유럽 근대문명이 창안해 낸 ‘경제(Oeconomia)’라는 개념 및 실천의 형성과 관련한 보다 방대하고 장기적인 계보학적 추적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정치신학 및 경제신학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니체의 『도덕의 계보』와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 다양하고도 방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몇 가지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D. Stephen Long, *Divine Economy : Theology and the Market*, New York : Routledge, 2000; D. Stephen Long, Nancy Ruth Fox, Tripp York, *Calculated Futures : Theology, Ethics and Economics*, Waco : Baylor University Press, 2007. 특히 ‘Oeconomia’ 개념이 로마 말기에 기독교적 의미로 변형되는 담론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G. Agamben, *Le règne et la gloire*, ch.2 참조.

•

<자료>

Aegidius Romanus(Colonna), *De regimine principum Libri III*, Roma : Antonionum Bladum, 1556[Frankfurt : Minerva G.M.B.H, 1968].

Fagniez, Gustave, éd., *Documents relatifs à l'histoire de l'industrie et du commerce en France, t. II : XIV^e et XV^e siècles*, Paris : Picard, 1900.

Fawtier, Robert • Guerout, J., *Registres du Trésors des Chartes, t. II : Règnes des fils de Philippe le Bel, 1^{ère} partie : règnes de Louis X le Hutin et de Philippe le Long*, Paris : Archives nationales, 1966.

Laurière, E. de, et Secousse, D.-Fr., *Ordonnance des Rois de France de la troisième race, t. 1~2*, Paris; Imprimerie royale, 1723~1729.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http://www.corpus thomisticum.org>).

<연구논저>

게오르그 짐멜 저, 김덕영 역, 『돈의 철학』, 길, 2013.

남종국, 「12세기 교회법학자 그라티아누스의 경제윤리」, 『대구사학』 11권, 2013, 132~157쪽.

남종국, 「12~3세기 이자 대부를 둘러싼 논쟁 : 자본주의의 서막인가?」, 『서양사연구』 52권, 2015, 5~38쪽.

브로니슬라프 게레멕 저, 이성재 역, 『빈곤의 역사 : 교수대인가 연민인가』, 길, 2010.

성백용, 「14세기 후반 - 15세기 초 프랑스 왕정과 북부 도시들의 반란-국가 재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2002.

홍용진, 「에지디우스 로마누스의 “군주통치론” : 중세 말 프랑스에서 정치 텍스트의 생산과 유통」, 『서양중세사연구』 제27호, 2011, 247~279쪽.

_____, 「14세기 전반기 프랑스의 정치현실과 공공성」, 『서양사론』 제110호, 2011. 9, 30~67쪽.

_____, 「필리프 5세 통치 시기 정치적 문제들과 왕권의 대응」, 『서양중세사연구』 제29호, 2012. 3, 101~127쪽.

_____, 「중세 ‘교회(Ecclesia)’ 개념의 재파열 : 프란체스코회 영성과 - 13세기 말~14세기 초 남부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사 연구』 제32호, 2015, 5~28쪽.

Agamben, Giorgio, *Le règne et la gloire(Homo sacer II-2)*, Paris : Seuil, 2008.

Aladjidi, Priscille, *Le Roi, père des pauvres. France XIII^e-XV^e siècle*, Rennes, PUR, 2008.

Avril, François, “Un moment méconnu de l’enluminure française : le règne de Jean le Bon”, *Archéologia*, Vol. 162, 1982, pp. 24~31.

Castel, Robert, *Les métamorphoses de la question sociale*, Paris : Seuil, 1995.

Cazelles, Raymond, “Une exigence de l’opinion depuis saint Louis : la réformation du royaume”, *Annuaire-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e France* année 1962-1963, 1964, pp. 91~99.

_____, “Quelques réflexions à propos des mutations de la monnaie royale française(1295-1360)”, *Moyen Âge*, Vol. 72, n. 1, 1966, pp. 90~100.

_____, “Jean II le Bon : quel homme ? quel roi ?”, *Revue historique*, T. 509, 1974, pp. 5~26.

_____, “La stabilisation de la monnaie par la création du franc (décembre 1360) — Blocage d’une société”, *Traditio*, Vol. 32, 1976, pp. 293~311.

_____, *Société politique, noblesse et couronne sous Jean le*

- Bon et Charels V*, Genève : Droz, 1982.
- Favier, Jean, *Philippe le Bel*, Paris : Fayard, 1988.
- Geremek, Bronislaw, *Le salariat dans l'artisanat parisien aux XIII^e-XV^e siècles. Étude sur le marché de la main d'oeuvre au moyen âge*, Paris : Ed de l'EHESS, 1963.
- Hervieu, Henri, *Recherches sur les premiers états généraux et les assemblées représentatives pendant la première moitié du quatorzième siècle*, Paris : E. Thorin, 1879.
- Horrox, Rosemary, tra. & ed., *The Black Death*,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 Kaye, Joel, *Economy and Nature in the Fourteenth Century. Money, Market Exchange and the Emergence of Scientific Though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Keen, Maurice, *England in the Later Middle Ages*, London : Routledge, 2003.
- Langholm, Odd, *The Legacy of Scholasticism in economic thought : Antecedents of choice and powe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Legauy, Jean-Pierre, *Pauvres et marginaux au Moyen Âge*, Paris : Gisserot, 2009.
- Little, Lester K., *Religious Poverty and the Profit Economy in Medieval Europe*,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 Long, D. Stephen, *Divine Economy : Theology and the Market*, New York : Routledge, 2000.
- _____, Fox, Nancy Ruth, York, Tripp, *Calculated Futures : Theology, Ethics and Economics*, Waco : Baylor University Press, 2007.
- Lot, Ferdinand, "L'état des paroisses et des feux de 1328", *Bibliothèque de*

- l'Ecole des Chartes*, T. 90, 1929, pp. 51~107; pp. 256~315.
- Mollat, Michel, *Les Pauvres au Moyen Âge*, Paris : Complexe, 2006.
- Parisoli, Luca, dir., *Pauvreté et Capitalisme. Comment les pauvres franciscaines ont justifié le capitalisme et le capitalisme a préféré la Modernité*, Palermo : Officina de Studi Medievali, 2008.
- Renouard, Yves, “L’Ordre de la Jarretière et l’Ordre de l’Étoile. Étude sur la genèse des Ordres laïcs de Chevalerie et sur le développement progressif de leur caractère national”, *Moyen Âge*, T. 55, 1949, pp. 281~300.
- Richard, Jules-Marie, “Ordonnance inédite de Philippe le Bel concernant les métiers de Paris(7 juillet 1307)”, *Mémoire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e Paris et de l’Île de France*, 1876, pp. 133~141.
- Strayer, Joseph R., “Consent to Taxation under Philip the Fair”, J. R. Strayer & Charles H. Taylor, *Studies in Early French Taxation*, Cambridge, 1939, pp. 3~105.
- Tedeschini, Giacomo, aut., Nathalie Gailius & Roberto Nigro, tra., *Richesse franciscaine. De la pauvreté volontaire à la société de marché*, Paris : Verdier, 2008.
- Vivier, Robert, “Une crise économique au milieu du XIV^e siècle. La première grande intervention de la royauté dans le domaine économique : ses causes”, *Revue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8^e année, 1920, pp. 215~229.
- _____, “La Grande ordonnance de février 1351 : les mesures anticorporatives et la liberté du travail”, *Revue historique*, T. 138, 1921, pp. 201~214.
- Wood, Diana, *Medieval Economic Though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The State's Economic Polices for Paris in the Late Middle Ages during the Government of John II the Good

Hong, Yong-Ji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the Ordinance of John II promulgated in February 1351, in particular for the capital of Paris in order to intervene in the economic and demographical crisis and to regulate the price of labour and the merchandise. In this Ordinance, many scholars focused on the refusal against mendicancy and the imposition of labour, as the response of labour shortage after the Great Plague in 1347-1350. But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is not limited to this problem. The regulation of the market and the price by the royal government constructs the broad context of the politics on poverty and labour and these two problems move from the religious and ethical category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one. It is important to observe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is Ordinance that can be explained in two levels: on the one h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and on the other, ideological. The intent to control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kingdom is issued not only from the demographical catastrophe but also from war and financial problems deepened throughout the 14th century. The royal government wanted to fill the treasure, principally for the war against England and this awakened its interest in the problem of the economic situation, especially on the affairs of money and taxation. With these realistic

* HK Professor, Institute for Urban Humanities, University of Seoul.

needs, the survey on the ideological context presents the thought on various theories and discourses in the late 13th and early 14th centuries. Thomas Aquinas and Egidius Romanus already underlined the role of the commerce and the merchant for the wealth of kingdom and royal control. Peter of John Olivi (Petrus Johannes Olivi) developed the concept on the market, the merchant and money on the basis of voluntary poverty, the criterion of the evaluation of the utility and the price. All these phenomena present that from the 14th century, the problems on labour and poverty began to ent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domain, considered to be the object of regulation of the royal government. From that time on, poverty was correlated more closely with labour and these two problems constitute the indispensable elements of the economy of the kingdom.

Key words: Paris in the late Middle Ages, poverty, labour, Oeconomia, John II the Good, Peter of John Olivi (Petrus Johannes Olivi), capital

필자 E-Mail: hadrianus@hanmail.net

투고일 2017년 04월 10일 / 심사완료일 2017년 04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4월 24일